

첨부(1) [서울대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시정요청 (안)]

1. PQ 평가기준

	변경 전	변경 후
PQ 평가기준 -기술자 경력/실적 -업체유사용역실적	나.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1) 기준 :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(내진성능평가 포함) 용역 실적으로서 2) 인정 범위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종 및 2종 시설물 중 5.건축물 또는 복합시설물에 포함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(내진성능평가 포함) 용역	나.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1) 기준 :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(내진성능평가 포함) 용역 실적으로서 2) 인정 범위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1종, 2종 및 3종 시설물 중 5.건축물 또는 복합시설물에 포함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(내진성능평가 포함) 용역
시정사유	⇒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건축물은 공공 및 민간건축물로써 1,2,3종 시설물 포함. 모든 회원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 경력,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.	